

재난피해자 권리 안내서

이주민 편



집필

오유현 (호모인테르)

박재윤 (호모인테르)

번역

김조이스

삽화

임예은

〈재난피해자 권리 안내서〉의 발간에 부쳐

〈재난피해자 권리 안내서〉(이하 ‘안내서’) 작업은 2023년 1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에 4·16재단이 발간한 〈재난피해자 권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의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라 구체적인 권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2021년 발간한 〈매뉴얼〉 집필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피해자들의 곁을 지키며 조력하고 경험을 쌓아온 기관과 활동가들이 〈안내서〉 집필 작업에 참여해주었습니다. 둘러앉은 우리는 10개월에 걸쳐 이 〈안내서〉에 담겨야 할 내용과 집필 형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뉴얼을 쓰기보다는 기존 〈매뉴얼〉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매뉴

알》의 개정증보판이 될 <안내서>는 일선에서 걷어올린 경험과 사례를 Q&A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안내서>에는 <매뉴얼>에 담겼던 피해자, 언론, 조력자,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외에도 재난피해자, 이주민, 법률, 심리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재난피해자 분야는 재난피해자들의 ‘권리’ 설명에 한정하기보다는 참사 이후 완전히 달라진 일상을 살아내야 할 피해자들의 고통과 막막함에 작은 언덕이라도 되기를 바라며 작성했습니다. 재난피해자의 권리 1부는 센터가 책임졌고, 재난 이후 재난피해자가 마주하게 될 삶에 대해서는 4·16세월호참사 가족들, 10·29이태원참사 가족들, 7·15오송지하차도 참사 가족들, 7·18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학습 참사 가족들이 함께 나눠준 이야기를 고 이한빛 PD의 어머니 이신 김혜영 선생님이 정성스레 정리해 도와주셨습니다.

이주민 분야는 그동안 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이주민들의 권리영역에 첫발을 내딛는 심경으로 적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소통’을 고민하는 호모인테르의 오유현, 박재윤 활동가가 아니었다면, 아직 우린 시작조차

못 하는 처지일지도 모릅니다.

법률 분야는 2014년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에서 작업해주셨습니다. 홍지백 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숙란, 오세범, 이시정, 최석봉, 황필규 변호사가 지난 10년간 몸으로 걸어올린 경험과 지식들을 담아냈습니다. 시민사회의 손길이 채 닿지 못한 현장까지 채겼던 법률가들이 재난피해자의 현실에 튼튼히 발 딛는 권리는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세심하게 보여줍니다.

심리 분야는 재난 피해자를 지원하는 심리 상담사들을 위한 길잡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재난 피해자들의 곁이 되어온 이들도 함께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고 지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과 돌봄을 필요로 하니까요. 글에는 다양한 재난피해자들을 따로 또 함께 만났던 심리 상담사 이윤호, 오유현, 유가영님의 경험과 조언이 담겨있습니다.

조력자 분야는 재난피해자 지원을 시작하는 시민사회 단체 및 활동가를 위한 장입니다. 재난피해자에 대한 조력의 자원과 경험이 수도권, 고연차 활동가에게 집중된 현실

을 고민하며 생명안전 시민넷 김혜진 활동가가 <매뉴얼>에 이어 집필을 맡아주었습니다. 바쁜 틈을 쪼개 발품을 팔아 적어내려간 글 속에는 이제 시작하는 활동가들을 위한 촘촘한 설명과 함께 따듯한 관심과 격려가 깃들어 있습니다.

언론 분야는 이번에도 미디어인권연구소 몽클의 김언경 활동가의 노고에 빚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파괴된 재난 앞에서 재난과 재난피해자를 보도하는 기자의 자세는 어떻게 하는지, 혐오와 오보를 막고 책임을 감시하는 파수꾼으로서 언론의 역할을 되짚습니다.

참혹하고 열악한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최일선의 국가로서 재난피해자의 ‘옹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공무원 분야는 개인 자격으로 집필에 합류해준 국가인권위원회 김태은 조사관 덕분에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선언’이 아닌 ‘행동’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길을 공무원 분들과 함께 찾아나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집필 과정에서 집필진들은 여러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해당 영역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피해자들

과 함께 해온 이들을 인터뷰로, 토론으로, 워크숍으로, 설문조사로 만나 그들의 경험과 고민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생산한 재난피해자 실태조사, 토론회, 정책 등의 자료도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였습니다.

각 분야는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을 시작하는 이들을 위해 쓰였지만, 피해자들과 시민들에게도 유용할 것입니다. 안내서에 담긴 이야기들은 우리가 마주해왔고 또 마주하게 될 재난 앞에서 묵묵히 나아갈 힘을 북돋습니다.

〈안내서〉는 따로 또 함께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각 장마다 완결성 있게 읽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안내서〉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서술을 덜어내기보다는 각 장의 맥락과 흐름 안에 조화롭게 배치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각 장 집필자들의 집필 방식과 내용 또한 최대한 존중하려 애썼습니다.

〈안내서〉를 읽다 보면 의문이 풀리고 길을 찾은 듯한 안도감도 들겠지만, 새로운 질문과 의구심이 드는 대목도 많을 것입니다. 〈안내서〉에 쓰인 글과 현실의 간극에 따른

한숨이 나오고, 좌절감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느 부분은 이음새의 구멍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모든 부족함은 기획과 총괄을 맡은 센터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건대 이 모든 것이 모자람이나 공백으로 여겨지기 보다는 새롭게 길을 내는 시간 속에서 함께 보태고 채워질 가능성을 지닌 여백으로 여겨지면 좋겠습니다. 4·16세월호 참사를 통해 뼈아프게 견어올린 재난피해자의 권리라는 개념이, 재난피해로부터의 일상 회복이라는 사회의 책무가 현실에 어렵게 뿌리내리며 겨울을 나는 과정으로 인식되길 바랍니다. 센터 역시 발간 이후에도 집필진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조금씩 내용을 더 가다듬으며 채워가겠습니다.

〈안내서〉가 재난피해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길에, 사회를 조금 더 인간답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새롭게, 그리고 지금도 묵묵히 길을 내는 이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10월 집필진들의 마음을 모아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재난피해자 권리 안내서〉의 발간에 부쳐	4
서문	12
Q1. 재난은 무엇인가요?	16
Q2. 이 안내서에서 지칭하는 ‘이주민’은 누구인가요?	19
Q3. 이주민 역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21
Q4. 재난이 발생하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3
Q5.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시 지원 사례가 있나요?	28
Q6. 이주노동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부상 등 피해를 입는 경우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33
Q7. 이주노동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37
Q8. 이주민으로서 재난 시 또는 지원을 받는 데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까요?	39
Q9. 이주민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제 지원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42
Q10.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44

Q11.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번역, 특히 재난 시에는 실시간 대응과정의 통역 지원이 중요할 텐데,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유의해야 할까요?	49
Q12. 재난피해자 통역지원 시 통역사에게도 심리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53
Q13. 이주민의 경우 한국 정부의 역할과 함께 본국 대사관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 재난 시 대사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54
부록1 지역별 이주민지원 단체 및 기관 리스트	59
부록2 이주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형 워크숍	67

서문

‘재난’ ‘이주민’이라는 단어를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해보면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사들이 주로 나옵니다. 조금 더 찾으면 공적 마스크 배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에서 수많은 배제와 차별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2022년 이태원참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특히 정보 접근과 지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들 유가족에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억에서 사라지는 일일 것입니다. 자국 매스컴에서도 이름 없이 ‘이태원 압사 사망자’라는 한 줄의 단신으로 하루이틀 사이에 사라져가는 현실에 유가족들은 상실과 소외감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재난의 피해 형태나 규모는 무척 다양하지만 압도적인

사건들만이 기억되고 주목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규모의 여러 재난 현장에는 예외 없이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과연 재난 발생 시 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특히나 재난 이전과 이후 예방 및 대응 차원의 정보·공공서비스 접근을 위한 소통·통역 등의 측면에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난피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이주민들이 권리 및 지원 문제의 사각지대에 있지는 않은지 모두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차별과 배제가 일어났듯이 당위와 현실의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동일한 언어권·문화권 내에서도 소외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대로 피해 규모에 따라, 언론의 주목을 받았느냐에 따라, 개개인에 따라 지원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국민’으로서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등 다양한 지위는 지원 과정에서 체계성과 예측 가능성보다는 우연성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재난 이후 또 다른 재난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안내서를 만드는 과정을 더욱 어렵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이주민들과 상호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이 안내서를 만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권리의 주체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회복력에 기여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 독자로서 이주민 당사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의 확장을 위해 이제 막 시작하는 이주민 활동가나 실무자를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재난과 이주민에 대해 이미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실무자에게 ‘재난’과 ‘이주민’에 대한 입체적인 시각을 가질 영감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재난 현장과 통역 관련해서는 분명 참고할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독자들을 나열하고 나니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닌지,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일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안내서가 부재해왔고 법적 근거와 적용 간에 커다란 괴리가 여전하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합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닌 재난의 피해자로서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이들과 함께 하는 조그만 등불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러한 등불이 여럿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번 이주민을 위

한 재난피해자 권리 안내서의 첫걸음을 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내서를 위해 여러 분들(권미정, 류민, 서신, 손건웅, 신승훈, 안은정, 은수연, 이지영, 조인영, 한승훈)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경험하고 고민한 조각들을 나누며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함께’에서 있었던 공개 워크숍에서는 토론자 분들(김하이, 이정은)이 참여하여 소중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가독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쉽지 않은 삽화와 번역임에도 임예은 님과 김조이스 님이 기꺼이 일을 맡아주셨습니다. 이주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형 워크숍에서 충남이주여성상담소의 통번역 활동가 및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분들이 경험과 지혜를 적극적으로 나눠주셨습니다. 이 안내서는 이분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유현, 박재윤(호모인테르)

국가의 재난 총괄 부서인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와 화재, 붕괴, 폭발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됩니다. 또한 재난은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화산활동,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충돌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의 사회재난”으로 구분됩니다.¹

행정의 언어로 된 재난의 정의와는 별도로, 여러 이주 배경 주민들의 실제 목소리를 담은 정의는 이러합니다.²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생길 수 있기에 예측할 수 없지만 커다란 피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 고생과 불행이 이어지고, 심리적인 외상인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외에도, 생활 속에서 이주민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부정적 시선이 나 인식 역시 ‘사회적’ 재난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 속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이주민에게는 ‘일상이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들과 두 차례 가진 재난안전 워크숍 기록을 참조함.



Q2.

이 안내서에서 지칭하는 ‘이주민’은 누구인가요?

이주민들의 수가 증가하며 한국의 언어적·문화적 다양성 역시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주 배경 주민에 대한 지칭이나 해당되는 범위는 정부 부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안전부의 정의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의 정의에 따르면 ① 국내에 90일 초과 체류한 국적 미취득자, ② 외국인이었으나 국적을 취득한 자, ③ 결혼이민자 및 국적 취득자의 미성년 자녀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주민을 지

칭하고자 합니다. ① 국경을 넘어 이주해 온 사람, ② 여행을 목적으로 한 단기체류와 구분되는 장기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³



3 법무부에서는 ‘단기체류 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기준 ②에 따르면 이주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재난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기에 질문 13의 이태원 참사 사례를 통해 지원된 바를 참고했다.

Q3.

이주민 역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재난 시 더욱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어린이, 노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⁴ 제5조 2항(외국인에 대한 특례

4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기상황이라 함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내용)에서 위기상황 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그 범위는 시행령 제1조의 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제2조 제2호에 따라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Q4.

재난이 발생하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첫째, 재난(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을 입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입은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미등록 이주민은 불가함)이 피해신고서(그림 2, 3 참조)를 작성하여 해당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접수는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지원의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주 생계수단 판단을 위한 자료 및 각종 지원 혜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요청될 것

입니다. 또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추후 신고내역 확인 시 필요할 수 있으므로 피해 현황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개별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언어정보적인 접근의 제한으로 신청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역에 있는 이주민지원단체에 문의해보십시오(부록1 참조).

둘째,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지원 외에도 지역마다 별도의 시민안전 무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를 통한 재해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보험이기에 보험 신청과 수령에 필요한 절차를 이주민이 각자 밟아야 합니다. 아래의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민안전 무료보험 혜택

해당 지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주민 포함 모든 주민이 가능하지만, 미등록체류외국인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

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및 부상, 감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생활안전보험입니다. 예시: 태풍으로 인한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버스 탑승 중 뒤로 넘어져 후유장애(뇌출혈)가 발생한 경우 등.

- 지역마다 보상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자신의 거주 지역은 어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청구 및 지급 절차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국민재난안전포털 > 풍수해·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조회).⁵ 또한 해당 주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보험사별로 양식 및 제출 서류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서 자세한 청구 및 지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담당부서 명칭이 지자체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안전’이란 명칭이 들어간 부서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사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서울시민안전보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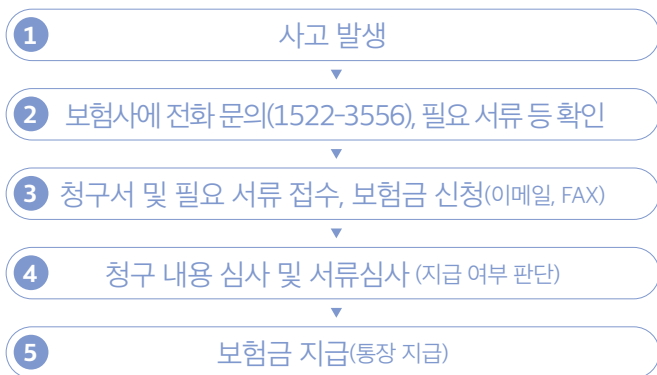
①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5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bscrbSttus.html?menuSeq=842>

(☎1522-3556)에 문의(*한국어로만 상담 가능)

- ②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 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 접수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



시민안전보험은 구민안전보험과 중복된 보상 내역이 있는
경우 각각 청구하여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과도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Q5.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시 지원 사례가 있나요?

구체적인 지원의 사례들을 보면 막연할 수 있는 재난이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난의 종류에 따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2023년 경기도의 사회재난(화재)⁶

경기도의 다세대주택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 아동을 포함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대피하였습니다. 다수의 아동이 사망한 가정이 있었고, 주로 이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재난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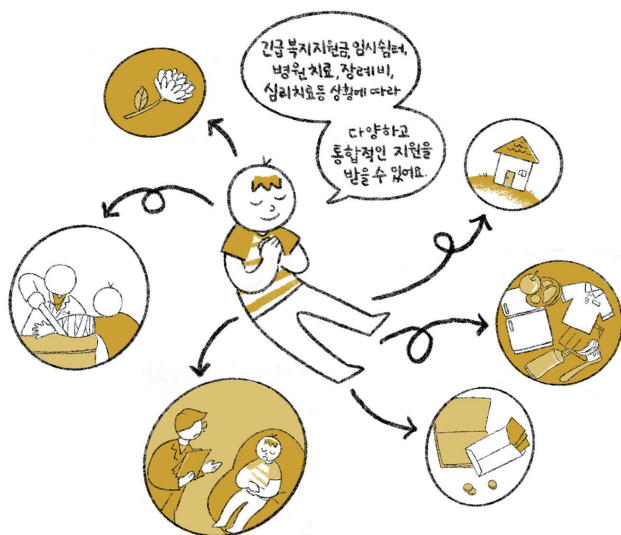
6 이 사례들은 당시 지원 업무를 맡았던 실무자 및 유관 지원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받은 지원(물리적, 심리적 등) 내용과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추후 재난지원의 이상적인 방향을 위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의 시청 아동권리과와 복지과를 중심으로 사례관리자가 배치되었고, 지역 내 복지관 및 이주민지원단체 등이 모여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피해 수준과 여러 당사자들의 필요를 확인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가정 외에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가정들을 담당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긴급복지지원금, 임시 쉼터, 장례비, 생계에 필요한 기본 물품(의류, 위생용품, 교복, 가전 등), 심리치료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해당 가족을 위한 직접 지원 외에도 주택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는 위클래스를 중심으로 전교생 대상 트라우마 심리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 소방서에서는 소방교육,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재난이 이슈화되면 지역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나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재난피해 당사자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 담당자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의 역할 중 하나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므로, 재난피해를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예산 및 지원처의 기금을

사용할 대상자를 누구로 규정하였는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2.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수해)

2022년 8월 8~9일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며 지하철역, 반지하 주택 등과 같은 우리의 일상 공간에 커다란 피해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충남의 일부 지역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도 선포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는 자연재난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 소식을 알리고, 반지하에 거주하다 침수피해를 입은 외국인주민을 위해 피해신고서 작성을 도운 바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재난피해 규모가 해당 지역의 행정 능력이나 재정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선포됩니다.⁷ 근래에는 2022년의 서울지역 수해, 2023년 경북 예천지역 수해, 2022년 이태원참사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앞서 설명한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신고와 동일하게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 온라인 사이트⁸를 통해서 피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8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pan/cdr/cdreaiBefore.jsp?menuSeq=157>

Q6.

이주노동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부상 등 피해를 입는 경우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이주민 그룹(예시: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중 가장 높은 비율(17.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⁹ 앞서 언급했던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과는 달리 안전사고라고 불리는 산재, 즉 산업재해(주관리 부처는 고용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 혹은 소규모의 피해가 난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 그 가족, 당사자가 속한 커뮤니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심리적 상흔을 남기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다시 복귀해 일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상흔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주노동자의 경우 앞서

9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살펴본 취약성과 함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선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고,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재해 사실과 정도에 따라 보상 내용이 결정되고 그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1 사고 발생(부상, 질병): 병원 이송 및 진단(치료)



2 산업재해 신청(요양신청): 신청서 본인 작성 후
진단서(소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제출



3 산업재해 인정 여부(요양승인): 본인 및 사업장에 통보

만일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사실 확인 거부)더라도 요양신청서에는 사업자 서명이 없어도 되기에 산업재해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요양급여(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료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가 해당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요양급여 이외에도 휴업급여(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 장애급여(치료 이후에도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남은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와 같은 지원도 있어 신청이 가능합니다.¹⁰ 이러한 지원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변에 있는 이주민지원 기관이나 노동건강연대¹¹와 같은 시민단체, 민주노총(상담센터) 등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프레스 공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살펴보겠습니다.¹² 한 미등록 노동자 A씨가 본 센터에 내방해 산재 관련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A씨의 진술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프레스 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하고 수술을 받았고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에 대해 사업주는 천만 원의 보상을 제의했는데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금액이 적정 보상금

10 다양한 보험급여 관련 정보들은 다음의 링크(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한번에 살펴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comp/recu/recu1-1.jsp>

11 <http://laborhealth.or.kr>

12 본 사례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의 산재지원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http://www.gmhr.or.kr/case/243?sca=%EC%82%B0%EC%9E%AC&page=4>

인지와 산재 처리 가능 여부를 센터에 문의했습니다.

센터에서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우선 산재보상 절차에 대해 재해인의 모국어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우측 수부 제4, 5수지 원위지골부 압괴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는 장해11급이 예상되어 평균임금 220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자의 평균 일급은 약 7만5천 원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은 1650만 원 정도입니다. 사업주가 제시한 1천만 원과는 큰 차이가 나는 금액이며, 산재요양 중인 미등록체류외 국인은 과태료 처분 없이 G-1 자격을 부여 받아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A씨는 공상 처리보다 산재 처리를하기로 마음먹었고 센터는 최초요양 신청과 휴업급여 신청을 도왔으며 A씨는 요양결정 통지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에서 G-1 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요양 종결 후 장해보상을 신청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산재보상이 완료된 이후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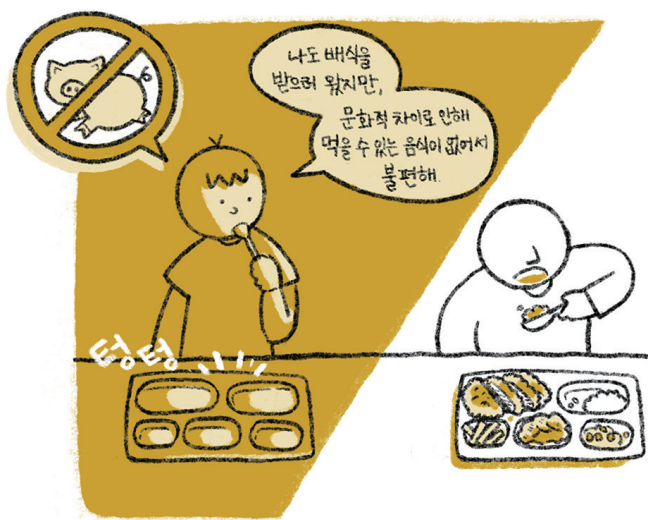
Q7.

이주노동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의 경우 상황을 잘 아는 고인의 지인(같은 모국어 사용자)이 현지의 유족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설명을 해주는 것이 최우선이고, 교섭 권한을 가진 유족들이 한국으로 오는 것이 다음입니다. 유족들이 당장 한국에 오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우선 권한을 피해 발생 지역의 이주민지원센터나 단체에 위임해야 이후 지원을 받는 데서 효과적입니다.

충북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한 중대재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는 일차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처남에게 연락했고, 처남은 지역의 이주민지원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이주민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통역을 연결해주어, 연계의 연계를 통해 충북지역 민주

노총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사건 초기에 지원단체들에 권한 위임(본국의 유가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음)을 한 덕분에 회사와 실무 교섭을 우선 시작하였고, 유가족이 입국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본교섭에는 유가족이 함께 하며 이후 3개월 내에 회사가 공식 사과문을 내고 마무리되었습니다.



Q8.

이주민으로서 재난 시 또는 재난지원을 받는 데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까요?

우선 이주민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안전취약계층(또는 재난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¹³으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고층 건물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화재가 났을 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대피하는 일에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력이 약해 경보기 알람을 듣고 화재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는 일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주민들 역시 개별적으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모든

13 <재난관리 및 안전법> 3조 9의3.

이주민을 취약계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일반화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선행 연구와 국내외 여러 사례들에 따르면,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보접근성 제한, 약한 사회적 연결망은 재난 시 공통적으로 취약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축약된 용어들로 가득하고 소수의 언어(한국어, 영어)로만 제공되는 재난안전문자는 많은 이주민들에게는 이해하기에 난해하고, 잦은 문자 발송으로 인해 오히려 불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도착한 직후 코로나19 시기를 보낸 유학생들은 언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을 홀로 이겨내야 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 역시 존재합니다. 코로나19의 예를 다시 들자면, 자가격리하는 동안 정부에서 보내준 식료품 키트의 경우 할랄음식을 먹는 이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서, 산업재해로 인해 중국인 동포가 목숨을 잃은 이후 분향소에 영정과 위패를 올린 뒤 정리를 하며 약간 움긴 일이 있었습니다. 하

지만 유가족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망자의 집으로서 한 번 자리를 잡은 영정과 위패는 옮겨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국가별로 장례문화는 상이할 수 있고, 망자에 대한 예우와 연결되므로 더욱 각별한 문화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Q9.

이주민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제 지원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앞선 질문과 답변을 통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재난별 지원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규정과 일부 사례에 불과하며 실제 현장에서 지원되는 모습을 보면 이주민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이 가중되고는 합니다.

최근 우리 모두가 겪었던 코로나19 사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재난’ ‘이주민’이라는 단어를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해보면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사들이 주로 나오고, 조금 더 찾아보면 공적 마스크 배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의 과정에서 수많은 배제와 차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이태원참사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희생자 유

가족들은 정보 접근 및 지원에서 배제되곤 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기억에서 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본국의 매스컴에서도 이름 없이 “이태원의 압사 사망자”라는 한 줄의 단신으로 하루이틀 사이에 사라져가는 현실에 유가족들은 상실과 소외감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재난의 유형과 규모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사건들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는 사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제대로 사과나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¹⁴이며,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체류 조건 때문에 정작 누구보다 지원이 필요함에도 사각지대에 머무르곤 합니다.



14 '남편 죽음 8개월 만에 받은 사과' "이주노동자는 목숨 값도 차별", MBC <뉴스 데스크>, 2024.5.1.

Q10.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재난 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라는 원칙을 떠올려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지만 대상자가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재난의 경우 그 피해에서 내 외국인에 따른 예외가 없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종·출신국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이 근로·사회보장·식량·의복·주거·건강·교육 측면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제법과 헌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을 보편적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때 반영해야 합니다.¹⁵ 또한 이러한 내용이 단지 문서상으

15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2022).

로만 반영되거나 일회성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시기, 특히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관성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누군가를 찾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은 ‘나’와는 다른 이방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별과 혐오의 발언이나 행위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 수반이나 지자체의 장은 갈등의 메시지 대신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인권적 메시지를 발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원칙을 재차 확인하고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차별 앞에서 또는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체류 지위와 관련된 상황으로 인해 이주민들 스스로 위축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경향이 없고,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정확히 알기 어렵다. 필요한 것이 있어도 누구에게 어떻게 요구해야 할지가 막막하다. 몰라서만은 아니다. 재난 현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을 죄스럽게 느끼기 쉽다.”¹⁶

선주민의 경우에도 이러하데 하물며 이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안내서를 작성하기 위해 진행한 현장의 활동가 및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의 노동 조건이 대부분 한국보다 열악하기에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도 되는지 몰라 조심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주민들이 재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비가시화되는 현실에서, 이주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의 하나일 것입니다. 재난 앞에서는 선주민/이주민 구분 없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주민의 권리와 참여가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함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과 전환에 힘을 더해줄 지원단체들의 존재와 연대하는 마음의 중요성 역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 <피해자권리 매뉴얼>(4·16재단, 2021).



이를 위해 이주민들의 정보접근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앞서 재난을 둘러싼 이주민들의 주요 취약 요인으로 언어장벽과 이로 인한 정보 접근 제한을 꼽은 바 있는데, 이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독려하기 위한 바탕에는 언어장벽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공공기관 차원에서 지역 내 거주 이주민

인구수를 기준으로 재난 정보를 필요한 언어들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번역한 후 이주민들이 자주 접근하는 정보 채널로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내 이주민 지원기관이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통·번역 팀을 평상시 구성하여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재난문자 사전 번역, 재난 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락처 공유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Q11.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번역,
특히 재난 시에는 실시간 대응
과정의 통역 지원이 중요할 텐데,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유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평상시 통역인 풀을 구축하고,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활동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이주민 관련 기관에서 지역 내/지역 간 어떠한 언어의 통역인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역인 풀이 구축되면, 그 다음으로는 재난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이해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자주 발생하는 재난의 이해, 재난 시 행동요령, 비상대비용품 사용법, 재난 이후 지원 절차나 내용 등). 그래야 관련 정보를 피해자의 언어로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겪은 우울감을 지칭하는 용어인 ‘코로나 블루’의 경우 ‘블루’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사회적 거리’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의미가 문화마다 차이 날 수 있기에 코로나19의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재난 관련 정보나 물리적 대응 차원의 이야기를 했지만, 재난은 심리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 역시 인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의 경우 26명의 외국인 사망자와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이주민들이 직간접으로 이 희생자·생존자들과 연결돼 있었기에 심리지원 역시 필요했지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 등 소수로 제한되었습니다.

그 밖의 언어 사용자들은 통역을 통해 심리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모인테르¹⁷는 참사 직후 긴급하게 트라우마와 통역¹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신건강

17 난민·이주민 지원단체의 실무자와 통역인을 위해 상호문화철학과 심리정서적 측면을 통합하여 공공서비스 통역 교육, 심리정서지원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http://www.homointer.com>

18 공익을 목적으로 호모인테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 센터가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정신건강상담 통역 시 고려할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상담 통역시 고려해야 할 실천 가이드’라는 영상을 제작해 일군의 통역사들에게 심리상담 통역 교육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해 이주민들이 그 재난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통역사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언어적·문화적으로 통할 수밖에 없는 이주민 피해자와 통역사 간 호혜관계 형성은 재난 이후 지원 과정이 잘 진행되는 데서 중요한 키입니다. 실제 산재로 인한 사망 이후 유가족들과 협상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통역사와 유가족 간의 호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듣게 됩니다. 친밀감과 신뢰가 있는 통역사에게 우선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역사는 함께 조력하는 지원단체들에게 상황을 잘 전달하는 것이 이후 협상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앞서 ‘재난 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라는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유가족이 한국에 있는 동안 산재와 관련된 소통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먹고, 자고, 이동하는 일련의 일상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통역지원은 누락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을 돕는 통역사가 없어 유가족이 식사 주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

엇보다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원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통역을 인식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Q12.

재난피해자 통역지원 시 통역사에게도 심리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통역사 역시 재난 관련 내용을 옮기다 보면 대리 외상 등 심리적인 영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서적인 변화, 악몽, 두통 등과 같은 신체적·심리적 영향이 보고되었고, 통역사 자신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주민 당사자가 통역사로 참여하는 경우 강한 감정이입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요한 조력자 그룹 중 하나인 통역사들이 지속적인 자기 돌봄과 통역 상황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 상황에서의 통역 사례 분석의 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Q13.

**이주민의 경우 한국 정부의 역할과
함께 본국 대사관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 재난 시 대사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대사관의 다양한 역할들 가운데 국외에 개별로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국가를 대표하는 작은 정부로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이 가장 와닿을 것입니다. 특히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자칫 체류국으로부터 지원의 사각 지대에 놓일 수 있기에 대사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2022년 이태원참사¹⁹의 사례를 통해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원참사로 인해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외국인이 26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재난이 발생할 시 각국 대사관은 최우선적으로 자국의 희생자를 파악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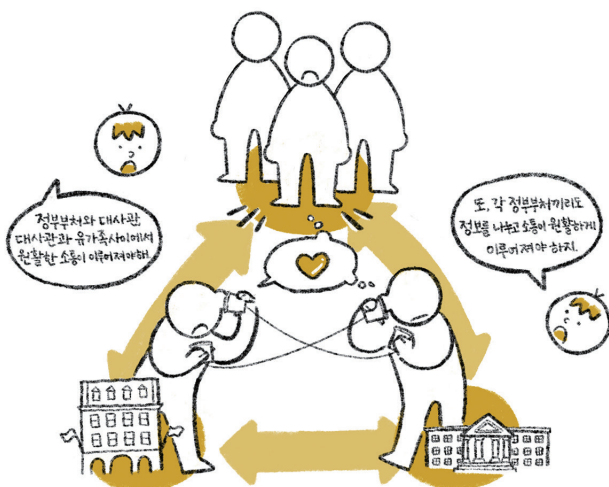
19 본 사례는 이태원참사 관련 기사(<https://newstapa.org/article/ojpc9>)와 10·29이태원 참사시민대책회의 실무자와의 소통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유가족에게 빠르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후 시신 인도, 장례 과정 등 재난 직후의 일부터 유가족 관련 뉴스나 지원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전달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태원참사의 경우 정보 전달 및 소통에서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외국인 희생자의 경우 사망 사실이 대사관이 아닌 희생자 지인을 통해 유가족에게 전달되었고, 시신 인도 과정에서 사전에 부검이 이루어졌음에도 유가족에게 부검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태원참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원의 내용을 정하고 유가족의 요청사항 등을 논의하면, 외교부가 담당 공무원을 통해 유가족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사관이 한국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다시금 전달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했다고는 하지만, 한국 정부가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 대사관이 선제적으로 확인 요청을 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참사 발생을 인지한 직후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을 위해 차후에 진행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하고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통이 편하고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채널(메일 주소와 담당 직원 등)을 명시하고, 유가족들

을 대함에 있어 존중 어린 태도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렇듯 정보 전달 및 소통에서의 공백은 14개국 26명에 달하는 이태원참사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 모두에게 비슷했습니다. 특히 희생자들의 사용 언어가 영어, 이란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오스트리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10여 개에 달하기에 유가족들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인해 정보 및 지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소외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생존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생존자들이 행정안전부 산하 10·29참사피해자지원단에 직접 등록을 해야 하며, 심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평상시 지역 내 이주민지원기관이나 가족센터 등 관련 허브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연결망을 확립해야겠습니다.



부록1

지역별 이주민지원 단체 및 기관 리스트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난 대응 및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내 이주민지원센터와 연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주요 지역별 이주민지원 단체 및 기관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전국(Countrywide)			
지역 (Location)	단체 (Organization)	홈페이지 (Homepage)	전화번호 (Tel)
전국	다누리 콜센터 (입국, 체류, 국적 취득 과정, 한국생활 관련 문의 사항)	www.liveinkorea.kr	1577-1366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업무 중심으로 외국인의 사회 적응에 필요한 행정 및 생활 관련 다국어 종합상담)	www.moj.go.kr/ immigration/1530/ subview.do	1345
	다국어 진정접수 (한국인,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진정 접수)	case. humanrights.go.kr	1331
서울(Seoul)			
영등포구 Yeong deung po-gu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Seoul Foreign Resident Center)	global.seoul.go.kr	02-2229-4900
성동구 Seongdong -gu	제2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구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2nd Seoul Foreign Resident Center (Seongdong Foreign Resident Center)	www.smwc.or.kr	02-2282-7974
성북구 Seongbuk -gu	성북외국인주민지원센터 (Seongbuk Foreign Resident Center)	www.sbmwc.or.kr	02-911-2884
은평구 Eunpyeong -gu	은평외국인주민지원센터 (Eunpyeong Foreign Resident Center)	nokbeon.or.kr	02-359-3410
양천구 Yangcheon -gu	양천외국인주민지원센터 (Yangcheon Foreign Resident Center)	www.shinmok.or.kr/ business/ employee.php	02-2643-0808
금천구 Geumcheon -gu	금천외국인주민지원센터 (Geumcheon Foreign Resident Center)	www.gmwc.or.kr	02-868-5208
강동구 Gangdong	강동외국인주민지원센터 (Gangdong Foreign Resident Center)	www.gdcenter.co.kr	02-478-0126
종로구 Jongno-gu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Seoul Migrant Workers Center)	www.smwc.kr	02-3672-9472

지역	단체	홈페이지	전화번호
중구 Jung-gu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 모임 (Labor Human Rights Center)	www.inkwon.or.kr	02-3785-0422
용산구 Yongsan-gu	용산나눔의집 (Yongsan Nanum House)	www.ysnanum.or.kr	02-790-1968
광역시(Metropolitan City)			
광주 Gwangju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Gwangju Foreign Resident Support Center)	girc.or.kr	1644-3828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All Nation's Culture Center)	www.carenation.or.kr	062-943-8930 010-3633-6748
대구 Daegu	대구가주민선교센터 (Daegu Migrant Mission Center)	url.kr/pumvjin	053-636-4171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Daegu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	www.dfwc.or.kr	053-654-9700
	성서공단노동조합 (Seongseo Industrial Complex Labor Union)	url.kr/kgmv58	053-585-6200
	이주와가치 (Migration and Values)	withiju.modoo.at	053-585-2987
대전 Daejeon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Daejeon Foreign Resident Integrated Support Center)	www.dic.or.kr/kor/ main	042-223-0789
부산 Busan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Busan Foreign Resident Support Center)	bfwc.or.kr/kr	051-304-0900
울산 Ulsan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Ulsan Foreign Resident Support Center)	www.usfr.or.kr	1577- 2818
	울산외국인센터 (Ulsan Migrant Center)	fcous.kr	070-7743-1828

지역	단체	홈페이지	전화번호
인천, 경기 (Incheon, Gyeonggi-do)			
의정부 Uijeongbu	의정부 엑소더스 (Uijeongbu EXODUS)	www.facebook.com/ujexodus/	031-878-6926
고양 Goyang	아시아의친구들 (Friends of Asia)	▶www.facebook.com/foasia0625 ▶foa2002.cafe24.com	031-921-7880
구리 Guri	구리 엑소더스 (Guri EXODUS)	www.facebook.com/exoduseast	031-566-1142
군포 Gunpo	이주민센터 아시아의창 (Asia Chang)	www.achang.or.kr	031-443-2876
김포 Gimpo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Gimpo Foreign Resident Support Center)	www.gimpofc.kr	031-986-7660
부천 Bucheon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Bucheon Foreign Resident Support Center)	www.bmwh.or.kr	032-654-0664
수원 Suwon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Suwon Migrant Community Service)	www.suwonmcs.com/index.php	031-223-0075
시흥 Siheung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Siheung Foreign Welfare Center)	www.shmwc.or.kr	031-434-0411
안산 Ansan	안산시외국인지원본부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Ansan Foreign Residents Support Headquarter)	www.ansan.go.kr/global	1644-7111
오산 Osan	오산이주노동자센터 (Osan Migrant Workers Center)	www.facebook.com/owcc2003	031-372-9301
파주 Paju	파주 엑소더스 (Paju EXODUS)	m.cafe.daum.net/nwpeace/_rec	031-948-8106
포천 Pocheon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Migrant Support Center of Pocheon Sharing House)	pcnnum.or.kr/15	031-536-2025

지역	단체	홈페이지	전화번호
평택 Pyeongtaek	평택외국인복지센터 (Pyeongtaek Migrant Welfare Center)	▶cafe.daum.net/ptmwc ▶www.facebook.com/ptmwc8855	031-652-8855
화성 Hwasung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Hwaseong Immigrants Community Service Center)	www.hsbluebird.co.kr/about/summary	031-8059-1261
강원도(Gangwon-do)			
강릉 Gangneung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Gangneung Foreign Workers Support Center)	www.gnscfw.org	033-655-8956
원주 Wonju	원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함께하는 공동체」) (Wonju Foreign Workers Support Center-With Community)	withc.hompee.com/user/main/index	070-7521-8097
경상남도(Gyung-sangnam-do)			
거제 Geoje	거제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 공간 새터) (Geoje Non-regular Workers Support Center)	www.gjwcw.org	055-633-8416 055-637-8416
김해 Gimhae	(사)한국이주민의집/ 김해이주민의집 (Gimhae Migrants' House)	gmahouse.modoo.at	055-334-7940
	김해제일교회 (스리랑카교회) (Gimhae Je-il Church) (Church of Sri Lanka)	www.1stch.com	055-334-3411
	구소련친구들		055-312-3844 010-8835-3844
	가야글로벌센터 (Gaya Global Center)		055-311-1577
	(사)글로벌드림다문화연구소 (Global Dream Mul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www.globaldream.or.kr	055-322-1365
	경남이주민문화센터 라함 (Gyeongnam Migrant Cultural Center 'Raham')	cafe.naver.com/racham	055-311-5433

지역	단체	홈페이지	전화번호
김해 Gimhae	(사)서원다문화행복나눔센터 (Seowon Multicultural Happiness Sharing Center)	band.us/ @sosohappiness	055-326-9182
사천 Sacheon	인도네시아 이슬람센터(사천) (Indonesia Islamic Center (Sacheon))	www.facebook.com/ annur.samcheonpo.5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 (Sacheon Multi-cultural Integration Support Center)	4000migrant.tistory. com	055-855-4003
양산 Yangsan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 (사)함께하는세상 (Yangsan Foreign Workers' House)	withmigrant.or.kr	055-388-0988
	(사)희망웅상	ko-kr.facebook.com/ hope.ungsang	055-366-2353 0507-1370- 2353
진주 Jinju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Gyeongnam Migrant Women's Human Rights Center)	cafe.daum.net/ gnwmigrant	055-741-6355
	진주 사랑의집 (Jinju House of Love)	jhouseoflove.com	055-763-0707
창원 Changwon	파키스탄 이슬람센터(마산) (Ehsaas-e-Pakistan Welfare Center (Masan))	url.kr/tyd78h	010-7257-1979
	경남이주민센터 (Gyeongnam Migrant Center)	www.mworker.or.kr	055-277-8779 055-237-8779
	인도네시아 이슬람센터(웅동) (Indonesia Islamic Center (Ung-dong))	url.kr/ajvyeu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Gyeongsangnam-do Foreign Resident Support Center)	www.gnmigrant.or.kr	055-237-8779 055-256-8779
통영 Tongyeong	외국인선원복지지원센터 (Foreign Seafarers Welfare Support Center)	www.koswec.or.kr	051-465-2151 051-465-2152
함안 Haman	인도네시아이슬람센터(함안) (Masjid Baitussalam Haman)	url.kr/mlwvhm	

지역	단체	홈페이지	전화번호
경상북도(Gyungsangbuk-do)			
구미 Gumi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K-Dream Migrant Support Center)	k-dreamcenter.co.kr/ center	1551-4279 054-464-2311
경주 Gyeongju	경주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Gyeongju Foreign Workers Support Center)	www.gjfsc.or.kr	054-778-2518
안동 Andong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Gyeongbuk Migrant Worker Center)		054-858-2260
칠곡 Chilgok	칠곡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Chilgok Migrant Workers Support Center)	www.chilgok.go.kr	054-979-6536
전라남도(Jeollanam-do)			
목포 Mokpo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 (Jeonnam Support Center For Migrant)	jnmigrant.co.kr	062-272- 1560
영암 Yeongam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Yeongam Foreign Resident Support Center)	www.yafc.or.kr	061-470- 6357~8
전라북도(Jeollabuk-do)			
전주 Jeonju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Jeonbuk Foreign Workers Support Center)	jbica.kr/ main/?menu=130	063-280- 6100
충청남도(Chungcheongnam-do)			
천안 Cheonan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Chungnam Foreign Resident Integrated Support Call Center)	chungnam. raonhosting.com	1522-1866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Chungnam Migrant Worker Support Center)	www.facebook.com/ cfwc2010	041-622- 7952
충청북도(Chungcheongbuk-do)			
음성 Eumseong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Eumseong-gun Migrant Support Center)	www.escf.or.kr	1551-1335 043-883-6727

지역	단체	홈페이지	전화번호
제천 Jecheon	(사)제천YWCA (Jecheon YWCA)	jcywca.or.kr	043-646-0096 043-645-2580
진천 Jincheon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Chungbuk Foreign Migrant Worker Support Center)	ko-kr.facebook.com/ chungbukmigrantcenter	043-534-6009
청주 Cheongju	청주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Cheongju Foreign Resident Support Center)	cjpsc.or.kr	1588-4877 043-262-0975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Chungbuk Migrant Women's Human Rights Center)	www.eyeinb.kr	043-223-5254
충주 Chungju	충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Chungju Foreign Worker Support Center)	cjcenter.or.kr	043-848-0852
	(사)충주YWCA (Chungju YWCA)	www.chjuywca.or.kr	043-848-3240
제주도(Jeju-do)			
제주 Jeju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Jeju Foreigners Peace Community	jejumwc.kr	1522-3134 010-3368- 1141 010- 2609-1141
	나오미센터 NAOMI Center	www.facebook.com/ naomicenterjejunaomi centerjeju	064-725-9199 070-4566-9740

부록2

이주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형 워크숍

1. 배경

우리는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커져가는 재난 일상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피해자 권리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민이 공동체와 사회의 회복력에 기여할 수 있고 이들의 지식·기술·역량이 재난위험 감소를 계획·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점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참여를 통해 확보 및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민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자조적으로 재난위험을 관리(예방-준비-대응-회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참여형 워크숍을 기획하여 진행 하였습니다.

2. 목표 및 기대 효과

- 재난 발생 시 이주민들의 재난피해자로서 권리의 인식 촉진과 확산.
- 이주민들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지역사회와 연결, 재난관리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재난안전망 강화에 기여.

3. 진행 내용 및 구성²⁰

- 재난 시 이주민의 권리와 재난대비 활동 참여. 각자의 재난 경험 공유와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참여와 권리 인식의 중요성 고취.
-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여 재난대비를 위해 단계별 행동 요강 작성.
- 우리만의 매뉴얼 작성(질문과 답변).

<이주민을 위한 평상시 재난 대비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
권리 기반의 인식 개선 및 당사자 참여 - 평상시 캠페인이나 재난 관련 준비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응급처치 키트, 중요 서류 사본 - 출생증명서, 여권, 운전면허증, 거주지 증명서, 기타 각자의 상황에 맞는 물품들을 갖추었습니까?	

20 충남이주여성상담소(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등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와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 차원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활동하는 20여 명의 통역활동가를 위한 '재난 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통역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과 '경기도 외국인주민 안전문화명예대사'(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2023년부터 전염병, 수해, 폭염, 화재, 한파 등 재난에 외국인주민이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 20여 명과의 워크숍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비상연락망 - 재난 발생 시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3명 이상(가족, 활동지원인 등) 있습니까?	
재난문자를 통한 정보접근성 - 재난 정보와 대피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문자의 예시) - 재난 발생 시 국가에서 제공하는 재난 알림 상황을 휴대폰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설정해두었습니까?	
1차 지원기관, 2차 언어지원 서비스를 통한 정보접근성(재난 시 필요한 연락처와 다누리콜센터)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또는 119안심콜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재난 발생 시 신고하는 기관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까? - 재난 발생 시 구조 요원에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역사회자원과의 맵핑 및 연계 - 재난 시 필요한 기관과 서비스들을(이주민 관련 정보, 의료·경제·생활 지원 등) 알고 있습니까? - 평상 시 연계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지자체나 주민센터와 필요 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까?	
실제 대피 - 재난 발생 시 대피하는 길과 대피소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물리적 대응방법 - 소화기 위치와 소화기 사용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 가정 내 누전 차단기 설치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 지진 시 대피 요령을 알고 있습니까?	
심리적 대응방법 - 재난 시 심리적으로 나 자신과 가족, 동료, 이웃의 안정을 되찾도록 돌볼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4. 재난 시 정보 문자 작성을 위한 지침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지역의 이주민지원단체가 허브로서 평시에 재난 통·번역 팀을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재난 시 유용한 정보(재난문자 또는 감염병 전파 시 질병관리본부 등 재난 관련 기관에서 배포하는 정보)를 사전에 번역하는 일이 그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는 상황 발생 시 선제적·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과도한 정보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기 상황에서 메시지의 작성을 위한 실제적 조언입니다.²¹

① 해야 할 것

- 간단하고 기술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 사실에 입각한 검증된 정보만 포함합니다.
-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21 *Integrating migrants in emergency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in their host countries (IOM, 2016).*

위기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과 염려의 표현을 포함합니다. ‘우리’와 같은 대명사의 사용은 피해를 입은 공동체와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대응 주체자가 실행한 긍정적인 조치와 개입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합니다. 이용 가능한 지원 옵션에 대해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면 피해자가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불필요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으며 가족과 지역 사회의 불필요한 고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불확실성을 인정하되 기관이 정보를 확인하고 답변을 얻기 위해 취한 조치를 설명합니다.
- 특히 국가 전체가 비상사태에 처해 있을 때 이러한 상황에 빠진 것은 이주민들만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 메시지가 일관되는지, 확인된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② 하지 말아야 할 것

- 비판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전가하기.
- 사람, 조직 또는 미디어를 공격하거나 적대시하기.
- 비판적이거나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하기.
- 방어적이거나 변명을 늘어놓기.
- 언론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와 소문을 무시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하기.
- 피해자의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예: 인질 상황 중 또는 인신매매범에게 위치 공개).
- 지원자나 지원기관이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는 일.
- 다른 기관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발언하기(동의를 얻고 정보가 적절하게 검증되지 않는 한 다른 기관의 진술을 포함하지 말 것).

5. 우리만의 매뉴얼을 위한 질문과 답변 작성하기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나서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충남이주여성상담소와 같은 이주민지원기관의 경우) 주거 관련 이주민 쉼터와 연결 가능합니다.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지원과를 찾으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내 이주민 기관 또는 필요와 관련된 자원들(예: 해당 화재의 경우 천안시주거복지종합센터)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현장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상의 경우, 산재 신청 여부나 병원을 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지역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워크숍 진행



재난 경험 나눔



지역 자원 맵핑



재난문자 번역



우리만의 매뉴얼을 위한 질문과 답변

Disaster Victim Rights Guide for Migrants

Prologue	78
Q1. What is a disaster?	84
Q2. Who are the migrants referred to in this guide?	87
Q3. Can migrants receive government support if they are affected by a disaster?	89
Q4. What kinds of support can I receive when a disaster occurs?	92
Q5. Are there any examples of support during natural or social disasters?	99
Q6. How can migrant workers receive support if they are injured in a workplace accident?	106
Q7. What difficulties might migrants face during disasters or when receiving support?	115
Q8. There could be difficulties due to the unique circumstances of being a migrant. Are there any additional challenges in the support process?	119
Q9. What is needed to overcome these complex difficulties?	122

- Q10.** To improve access to informatio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nd particularly real-time interpretation during a disaster are important. What should we prepare and take into consideration? **127**
- Q11.** When interpreting for disaster victims, do interpreters also experience psychological impacts? **133**
- Q12.** For migrants, the role of their home country's embassy and the Korean government, seems important in cases of disaster. What roles do embassies play in such situations? **135**

I. Prologue

When you search the terms “disaster” and “migrant” on the internet, you will come across mostly articles about COVID-19 and disaster relief funds. If you continue to search, you will also find numerous instances of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such as the process of public mask distribution and the administrative order requiring COVID-19 testing for migrant workers.

The same occurred in the case of the Itaewon Tragedy in 2022, when the bereaved families of foreign victims faced exclusion from access to information and support. One of the most difficult experiences for the bereaved families was having their loved one disappear

from memory. In their home countries, news of the tragedy faded from the media in a matter of days, and their loved ones were reduced to a mere headline of “casualty of Itaewon crowd crush,” leaving the families to live with an unspeakable sense of loss and isolation.

While disasters come in many types and their impact takes many forms and sizes, only large-scale disasters tend to be remembered and receive attention. However, migrants are present in disaster sites of all sizes, which leads us to question how prepared we are in terms of safety for migrants in Korea, particularly in terms of disaster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before and after a disaster occurs, and in terms of communication and interpretation for migrants to access information and public services. In addition, in a situation where it is not easy for disaster victims to assert their rights, migrant victims may be even more cautious and hesitant to raise their voices, even though they, too, have been impacted. For

this reason, it is essential for all of us to examine whether migrants are further marginalized in terms of rights and support during a disaster.

Moreover, as seen in the examples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re are gaps between what clearly should happen and what happens in reality, and there are some individuals who face marginalization more so than others within the same linguistic and cultural community. Support can also vary significantly depending the case or individual, whether the disaster inflicted large-scale impact or whether or not the disaster received media attention. For “noncitizens” such as marriage migrants, migrant workers, international students, and refugees, the process of support is neither systematic nor predictable; rather, the diversity of “non-citizen” status can add haphazardness and uncertainty to the process, even causing a new disaster to occur on top of the initial disaster. This

complexity made the process of creating this guide even more challenging.

Our goal, above all else, was to create this guide through a process of mutual communication with migrants. We envisioned the primary audience to be migrants themselves, with hopes that they will take a central and active role in their rights and participate in the conversation about how to contribute to building resilience of their communities. In addition, to increase relevance within migrant communities, this guide was written with consideration for migrant activists and support workers who are at the beginning stages of participation. We also hope that this guide will inspire those who already have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disasters and migrants, to develop a more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on these issues. In particular, we believe there will be useful reference points regarding disasters and interpretation.

As we list the intended audience of this guide, we wonder if we are being too ambitious and worry whether the information will actually be practical and useful. Nevertheless, the absence of such a guide and the huge gap between the disaster management law and the application of the law highlight the current reality of disaster prevention and support for migrants. With the hope of being a small beacon of light and joining disaster victims who have been left alone in the complete dark, and with conviction that many more of these lights exist, we take this first step in creating this guide on disaster victim rights for migrants.

Finally, many individuals contributed to this guide through interviews, sharing their experiences and insights—Kwon Mi-jeong, Ryu Min, Seo Shin, Son Gunwoong, Shin Seung-hoon, Ahn Eun-jeong, Eun Soo-yeon, Lee Ji-young, Jo In-young, and Han Seung-hoon.

Additionally, panelists Kim Ha-i and Lee Jeong-eun provided valuable feedback at the public workshop hosted at Disaster Victims' Rights Center, Woori Hamkke. Despite the challenges of illustration and translation, Im Ye-eun and Joyce Kim willingly took on these tasks to enhance readability and accessibility. Through the participatory workshops aimed at strengthening migrant disaster response capacity,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ctivists from the Chungnam Migrant Women's Counseling Center and Gyeonggi Province honorary ambassadors for migrant residents actively shared their experiences and wisdom. We could not have completed this guide without their contributions. We extend our deepest gratitude to them all.

Q1.

What is a disaster?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is a law established und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which is the government ministry responsible for disaster management. According to this law, a disaster is defined as “an event that causes or is likely to cause any harm to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citizens and the State. This includes natural disaster caused by a typhoon, flood, heavy rain, earthquakes, etc. It also includes accidents such as fires, collapses, explosions, etc. that cause damage beyond the sca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well as damage caused by the paralyzation of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and damage caused by the spread, etc. of infectious diseases.”

In addition, disasters are categorized into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Natural disasters are categorized as disasters caused by natural phenomena such as a typhoon, flood, heavy rain, strong wind, wind and waves, tidal wave, heavy snowfall, lightning, drought, earthquake, yellow dust, excessive algae growth, volcanic activity, crash or collision of a natural space object. Social disasters are categorized as disasters caused by fire, collapse, explosion, traffic accidents, environmental pollution, etc., which cause damage beyond the sca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¹

Reaching beyond the administrative definition of disaster, the following is a definition formed with the

1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perspectives of various residents of migrant backgrounds.²

“A disaster is an unpredictable event that can occur anywhere and at any time and causes significant harm. It leads to hardship and misfortune and can cause psychological trauma. Aside from the specific event itself, the hatred and negative views and perceptions that certain groups such as migrants face in everyday life can also be considered 'social disasters.' In particular, for migrants, these experiences can make everyday life feel like a disaster.”



- 2 Workshop records from two disaster safety workshops held with the honorary ambassadors for migrant residents at the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Q2.

Who are the migrants referred to in this guide?

As the number of migrants increases, the linguistic and cultural diversity of Korea is also expanding. The terms used to refer to residents of migrant backgrounds and the scope they cover may vary by government ministry. The following is an explanation based o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s definition.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s definition, "foreign resident" includes all of the following.

- ① Residents who have stayed in the country for more than 90 days without acquiring Korean nationality, ② former foreigners who have acquired nationality, and ③

minor children of marriage migrants and naturalized citizens. More specifically, migrant workers, marriage migrants, international students,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citizenship, etc. come to mind. To go even further, while the scope of the definit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government ministry or terminology, this guide defines migrant based on the following criteria: ① A person who has migrated across international borders, ② A person residing long-term, distinct from those staying short-term for tourism.

* The Ministry of Justice uses the term "short-term staying alien." According to criterion ②, short-term residents are not classified as migrants in this guide. However, in times of disaster, no one is exempt. Please refer to Question 12 regarding the support provided in the case of the Itaewon Disaster. (See Question 12)

Q3.

Can migrants receive government support if they are affected by a disaster?

Yes. The law stipulates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the safety and provide support for certain groups such as children, older people, and migrants, who may face more harm during a disaster. Article 5-2 (Special Cases of Foreigners) of the Emergency Aid and Support Act³

- 3 This law aims to provide prompt support for people who need assistance when facing crisis situations such as financial hardship, so that they can overcome the crisis and live a healthy and dignified life. A crisis situation is defined as a situation in which a person or their household member living together and sharing living expenses, is struggling to maintain their livelihood due to one of the following difficulties.
1. If the primary earner in the household is deprived of the main source of income due to death, runaway, missing, being detained in a detention facility, or other reasons
 2. If a person is seriously ill or injured
 3. If a person has been abandoned, deserted, or abused by any household

outlines special provisions for foreign residents in crisis situations, specifying the types of support available to them. The scope of these provisions is detailed in Article 1-2 (Scope of Foreigners in Need of Emergency Aid) of the Enforcement Decree as follows.

1. A person married to a Republic of Korea national
2. A person who has been divorced from a spouse who is a Republic of Korea national or whose spouse is

member

4. If a person has difficulties in living harmoniously with his or her household members because of domestic violence against him or her or was sexually abused by any other household member
5. If a person has difficulties in living in a house or building in which he or she used to reside due to a fire, a natural disaster, or other causes
6. If the primary earner or the secondary earner has difficulties in performing his or her business due to temporary or permanent business closure, a fire in a place of business, or other reasons
7. If the primary earner or the secondary earner is deprived of the main source of income due to losing his or her jobs
8. If a cause or event specified by ordinance of each local government pursuant to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rises
9. If a cause or event specified and publicly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rises

deceased, and who is caring for a lineal ascendant or descendant with a Republic of Korea nationality

3.A person recognized as a refugee defined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Refugee Act

4.A person who has suffered damage from a fire, crime, or natural disaster without any fault of his or her own

5.Other persons deem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o require urgent support



Q4.

What kinds of support can I receive when a disaster occurs?

In the event of a natural or social disaster, you can apply for and receive the following support.

- Residents who live in an affected area should fill out a Damage Report Form (피해신고서, see images 2 and 3) and submit it in person at their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Undocumented migrants are not eligible.

※ The report must be submitted within 10 days after the disaster has ended. During the support process, you will be asked to consent to providing your personal

information. Public institutions such as central government agencies, etc., will use your personal information and documents to assess the main means of livelihood and to provide various support benefits. In addition, please prepare your ID and bank book copy.

☞ Tip. It is essential to take photographs of the damage and save them, as you may need them to verify your report.

☞ Tip. Migrants who face difficulty applying because of language barriers should contact their local migrant support center for assistance (see Appendix 1).

In addition to the support provided through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each region is enrolled in a separate free Citizen Safety Insurance plan. If this applies to your region, you may also receive disaster

compensation. However, because this is private insurance, each migrant resident should apply for and receive the insurance benefits directly.

- Free Citizen Safety Insurance Benefits: Available to all registered residents, including registered foreign residents, of the corresponding region. However, undocumented foreign residents are not eligible.

: This is a life and safety insurance that covers death and disability resulting from natural disaster, explosion, fire, etc.; death and injury caused by an accident while using public transportation; and damages caused by infectious disease, etc. Examples: Death caused by an underground parking lot flooding accident during a typhoon, disability (cerebral hemorrhage) caused by a fall while riding the bus, etc.⁴

4 <https://www.ins24.go.kr/safeInsrnc/intro/view.do>

 Tip. Because coverage may vary depending on your region, it is important to check your region's website linked on the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Portal to verify the type of insurance available and the claims and payment procedure.⁵ In addition, the resident who suffered damages must apply directly, and there may be differences in the forms and required documents depending on the insurance company. You can also check the detailed claims and payment procedures through the relevant department in your local government office. (The name of each local government's department may vary, but the word "safety" is generally included in the name.)

The deadline to file a claim is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you became aware of the accident.

Example: Insurance Claim and Payment Procedure

⁵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bscrbSttus.html?menuSeq=8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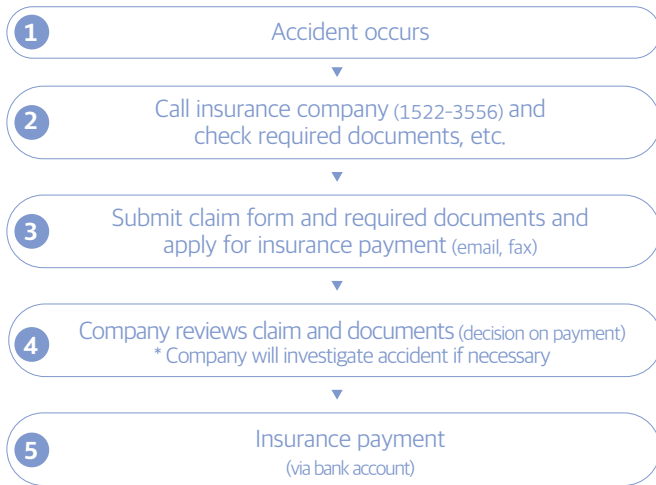
(Seoul Citizen Safety Insurance)

- ① If you experience an accident that falls under the coverage items, first contact the Citizen Safety Insurance Consultation Center (☎1522-3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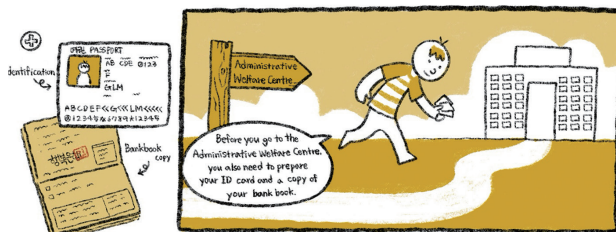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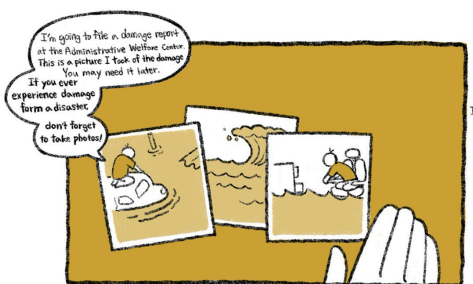
* Consultation available in Korean only.

- ② Follow the instructions provided by the Citizen Safety Insurance Consultation Center (☎1522-3556) and submit the claims form and required documents to the KB Insurance Consortium via email or fax (0507-774-0662).

Citizen Safety Insurance Claim Payment Procedure



If coverage details overlap between Citizen Safety Insurance and District Resident Safety Insurance, you can claim both and receive duplicate compensation. You can also receive Disaster Relief Funding for the same accident.



Q5. Are there any examples of support during natural or social disasters?

Looking at specific examples of support cases can help us to understand the vague meaning of “disaster” more concretely and to think about what action we need to take.

To give examples based on the type of disaster, we will start with the case of a social disaster caused by a fire last year.

Case 1: Damage caused by 2023 fire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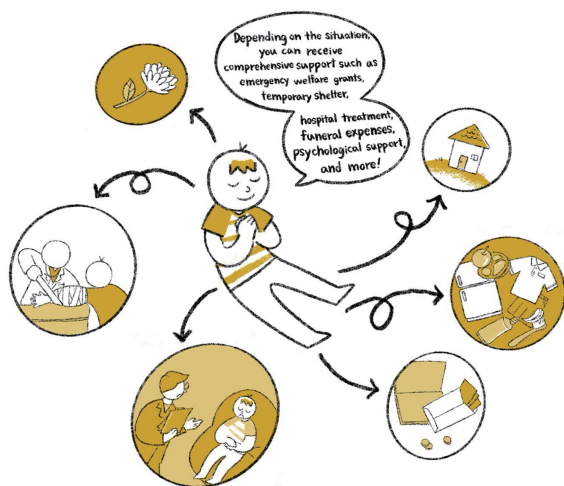
A fire in a multi-unit building in Gyeonggi Province resulted in multiple casualties and evacuations of residents, including children. One family lost several children in the fire. As the residents of the building were predominantly migrants, this became a significant issue in the local community. In response, the city's Child Rights Department and Welfare Department assigned case workers, and local welfare organizations, migrant support organizations, and other relevant groups gathered to hold integrated case meetings to assess the impact and the needs and provide support to all of the victims—not only the victims who suffered first-hand loss, but also the family members residing with the victims.

- 6 These cases were compiled based on interviews with support workers and other relevant supporters who provided assistance at the time. Although there may be differences from the actual support (physical, psychological, etc.) provided, these cases can still serve as a reference for ideal approaches in future support efforts.

The support provided included emergency welfare funding, temporary housing, funeral expenses, basic necessities (clothing, hygiene products, school uniforms, appliances, etc.), psychological therapy, etc. In addition to the direct support for the affected families, trauma-focused psycho-educational support through the Wee Class program was provided to all of the students of the elementary school that the victims had attended. The local fire department also conducted fire safety training and comprehensive emergency response training.

 **Tip.** In most cases, because accidents do not attract significant attention,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do not promptly get involved to provide support. Therefore, it can be helpful for disaster victims to visit their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community center) and speak with the representative in charge of supporting members of significantly underserved

vulnerable communities. Because one of the center's roles is the identify and support people in such vulnerable situations, the center will conduct an assessment to determine eligibility for assistance. However, the availability of support can depend on funding as well as the funding agency's criteria for assistance.



The following is a case of a natural disaster caused by flooding from heavy rainfall in a metropolitan area in 2022.

Case 2: Damage caused by 2022 flooding

On August 8 and 9 in 2022, record-breaking heavy rain hit Seoul, causing significant damage to everyday spaces such as subway stations and semi-basement homes. Subsequently, certain areas of Seoul, Gyeonggi, Gangwon, and Chungnam were declared special disaster zones.* At the time, a foreign residents' support center in Seoul announced information on how to apply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and assisted foreign residents living in semi-basement homes who were affected by the flooding, by helping them fill out damage report forms.

*Special disaster zones: Not all disaster areas are

designated as a special disaster zone. Rather, an area is declared as such when the scale of the disaster exceeds the administrative or financial capacity of the affected region, and national-level support is deemed necessary.

⁷ Recent examples include the 2022 flooding in Seoul, the 2023 flooding in Yecheon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and the 2022 Itaewon Tragedy.

In such cases, as with the reporting damage from natural or social disasters previously mentioned, reports of damage can be made by visiting the local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in person or the National Disaster Safety Portal online.⁸

7 Article 6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Scope and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s).

8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pan/cdr/cdreaiBefore.jsp?menuSeq=157>

Q6.

How can migrant workers receive support if they are injured in a workplace accident?

Migrant workers account for the largest proportion (17.9%) of the migrant population who do not have Korean nationality.⁹ In contrast to natural or social disasters mentioned previously, industrial accidents—often referred to as safety accidents and primarily manag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ay seem to involve fewer victims or be smaller-scale incidents. However, for the victims themselves, their families, and the communities to which they belong, these accidents leave irreversible physical and psychological impact. The

9 <https://url.kr/6mcrgg>

difficulty in returning to work at the site where the accident occurred gives us an idea of the extent of the impact. This is especially true for migrant workers, who often work in poor conditions, making them more vulnerable and in greater need of attention and practical support.

We will examine the two main categories of industrial accidents, injuries or illness and death.

First, in the event of an injury or illness, the worker must obtain a medical certificate or doctor's note (진단서, 소견서), complete the Application for Medical Care Benefits (요양신청서) and submit it to the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Compensation is determined based on the extent and circumstances of the accident, and the worker will be notified of the result.



 **Tip:** If the employer refuses to cooperate or verify facts about the accident, you can still apply fo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claim, as the employer's signature is not required on the medical care application form. Complete the necessary documents for filing the claim and submit them directly to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After the application is approved, medical care benefits (covering the cost of treatment or medical services provided by medical institutions) are provided until the injury or illness

is healed. In addition to medical care benefits, workers can also apply for temporary layoff benefits (compensation for the period they are unable to work due to the industrial accident) and disability benefits (granted if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remains after treatment).¹⁰ If you need assistance during the application process or with these support programs, you can ask migrant support organizations, civic groups like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¹¹ and counseling centers at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for help.

Next, let's look at a case of an industrial accident that occurred in a press factory.

10 You can access lots of information regarding insurance benefits through the following links.

Korean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한번에 살펴보기):

<https://www.comwel.or.kr/comwel/comp/recu/recu1-1.jsp>

English (What is WCI?->WCI Benefits): <https://www.comwel.or.kr/eng/comp/kind/wwci.jsp>

11 <http://laborhealth.or.kr/>

Case 3: Industrial Accident at a Press Factory ¹²

A, an undocumented worker, visited a center to request consultation regarding an industrial accident. According to A's statement, A sustained an accident while working the press machine at work. He was immediately transported to the hospital for surgery and is now receiving outpatient treatment. The employer offered compensation of 10 million won for the accident, but A consulted the center to determine whether the amount was fair and if it was possible for his accident to be covered by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he center documented the consultation according to A's statement and explaine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process in detail in A's native language.

12 This is a recompiled case based on an actual industrial accident case supported by the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http://www.gmhr.or.kr/case/243?sca=%EC%82%B0%EC%9E%AC&page=4>

A sustained injuries such as a crush and amputation of the fingertip bones of the fourth and fifth fingers of his right hand, and it was expected that he would be classified with a grade 11 disability, which would entitle him to a lump sum disability compensation equivalent to 220 days of his average daily wage. With an average daily wage of approximately 75,000 won, the disability compensation would amount to about 16.6 million won. The center informed A that the disability compensation amount would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10 million won proposed by the employer. It also explained that undocumented migrant residents undergoing treatment for industrial accidents can be granted G-1 status without being subject to overstay fines, allowing them to receive stable treatment. A decided to pursu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rather than take the private settlement. The center assisted him with the initial application for medical care and temporary layoff

benefits. A prepared his Medical Care Decision Notice (요양결정통지서) and required documents, enabling him to change his status to G-1 at the local immigration office. After A completes medical treatment, the center plans to help him apply for disability compensation. Finally, aft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s settled, a decision will be made according to A's wishes, on whether to pursue a claim for damages due to his loss of work capacity.

In the case of death,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the deceased's friend who is well aware of the situation and speaks the same native language first and foremost contacts the bereaved family and provides reassurance, while also facilitating the arrival of the family members who have the authority to negotiate and represent the deceased's interests in Korea. Of course, it is often difficult for the bereaved family members to come to Korea

immediately. In such cases, it can be effective to delegate authority to a local migrant support center or organization to assist with subsequent support.

Case 4: Major accident at apartment construction site

A major accident occurred at an apartment construction site in Chungbuk, where a worker fell to his death while on the job. The company first contacted the worker's brother-in-law who was residing in Korea, and the brother-in-law then contacted a local migrant support center. The center actively provided interpretation services and eventually connected him to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of Chungbuk.

Thanks to the delegation of authority to the organizations supporting the case from the beginning (by receiving a power of attorney obtained from the bereaved family

in the home country), the organizations were able to start negotiations with the company. While the initial negotiations took some time, the bereaved family eventually participated in the main negotiations, and within about three months, the company issued an official apology and the matter was resolved. Ultimately, it appears that the difference in outcome depends significantly on who has the authority to proceed with the case.

Q7.

What difficulties might migrants face during disasters or when receiving support?

Migrants may face certain difficulties due to their unique circumstances. Administratively, the term “vulnerable groups in safety affairs (or vulnerable groups in disaster)” is used and defines “children, older people, disabled people, low-income groups, etc. as people who are vulnerable to disasters due to physical, social, and economic factors.”¹³

As mentioned, there are vulnerable groups in safety affairs. While there may be differences in the circumstances that lead to each group's vulnerabilities,

¹³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 clause 9-3

compared to the general population, the groups are all poorly prepared for disaster and lack disaster response capacity from an economic, physical, environmental, and informational standpoint. For example, older residents of high-rise buildings may have difficulty evacuating quickly using the stairs instead of elevators during a fire. They may also have difficulty recognizing the fire alarm, which could leave them to be unaware that a fire has broken 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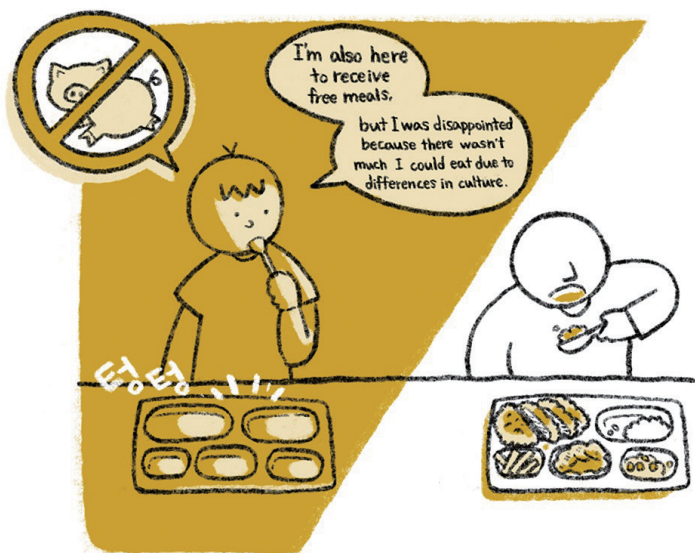
Of course, each migrant faces their own different individual situation, so we cannot consider all migrants to be part of a vulnerable group. It would also be difficult to generalize that for migrants who do face vulnerability, every aspect of their lives are difficult. However, many prior studies and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suggest that language barriers and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as well as weak social networks, can increase vulnerability during disasters.

Disaster safety text message alerts, which are full of

abbreviated terms and provided in few languages (Korean and English), are difficult for many migrants to understand and may even increase anxiety due their frequency. In addition,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rived in Korea and had to spend the COVID-19 pandemic here had to endure not only language barriers but also face the uncertainty of the pandemic alone.

There are also difficulties related to cultural aspects. For exampl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meal kits provided by the government to those in isolation did not adequately accommodate those who consume halal food. In another case, after an industrial accident that resulted in the death of an overseas Korean worker from China, the deceased's portrait and spirit tablet were placed on the memorial altar and later moved slightly during cleaning. However, according to the bereaved family, in Chinese funeral culture, the portrait and spirit tablet are considered the deceased's spirit's home, and it

is important that they are not moved once placed on the altar. This example shows that funeral customs vary by country, and special cultural considerations are needed, especially because they are connected to honoring the deceased.



Q8.

There could be difficulties due to the unique circumstances of being a migrant. Are there any additional challenges in the support process?

In the previous questions and answers, we have looked at the types of support available as well as cases of support provided for different types of disasters. However, when we observe how support is actually provided on the ground, differences arise due to difficulties beyond the unique circumstances of migrants.

Let's take for example COVID-19, a recent disaster that we collectively experienced. If you search the terms "disaster and migrants" on the internet, you will find mostly articles about COVID-19 and disaster relief funds. If you search a little further, you will come across

numerous cases of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in processes such as the distribution of public masks and administrative orders requiring COVID-19 testing for migrant workers.

Similarly, in the case of the Itaewon Tragedy in 2022, we can see that the bereaved families of foreign victims faced exclusion from access to information and support. One of the most difficult experiences for the bereaved families was having their family member disappear from memory. In their home countries, news of the tragedy faded from the media in a matter of days, and their loved ones were quickly reduced to a mere headline—"casualty from Itaewon crowd crush"—leaving the families to live with an unspeakable sense of loss and isolation.

Although the types and scales of disasters vary greatly, it is often the large-scale incidents that are remembered and attract attention, while countless other

incidents go unnoticed. For example, in cases of major accidents at apartment construction sites, it is often difficult to receive proper apologies or compensation.¹⁴ In particular, undocumented migrants, who often need support the most due to their precarious status, are often left in vulnerable situations and overlooked.



14 Apology Received Eight Months After Husband's Death... "Migrant workers face discrimination even in the value of their lives" (May 1, 2024). <https://url.kr/zpuw8a>

Q9.

What is needed to overcome these complex difficulties?

First, we need to remember the principle of universal and comprehensive support during disasters. While the Emergency Aid and Support Act exists, it has structural limitations due to restrictions on eligibility for assistance. Disasters do not discriminate between citizens and non-citizens. Therefore,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must identify and affirm that all people, regardless of race, nationality, or other criteria, have the right to protection in terms of labor, social security, food, clothing, shelter, health, and education.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and the Korean Constitutio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an obligation to guarantee these rights, and this

principle should be reflected i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universal disaster safety system.¹⁵ This should not simply be reflected on paper or be one-time declarations. During difficult times, especially in a disaster, we tend to instinctively look for someone to blame, often targeting "outsiders" - those who are different from "us." To prevent further harm caused by discriminatory or hateful speech or actions, it is important for heads of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 leaders to emphasize human rights-oriented messages that focus on supporting disaster victims, rather than messages promoting conflict.

Still, reaffirming these principles and changing policies takes time, and in the process, migrants themselves are often intimidated in the face of ongoing

15 Survey for the Establishment of a Disaster Safety System for Gyeonggi Province Migrant Residents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2022).

discrimination or by situations related to their status as undocumented migrants.

“In a disaster, most people are not in a position to assert their rights, and they may not even know exactly what they need. Even if they do need something, they may have no idea whom to ask and how to ask for it. But it's not that they do not know. In a disaster, most people feel guilty about thinking of their own needs.” ¹⁶

If this is the case for Korean residents, it is even more difficult for migrants to assert their rights. Interviews conducted with field activists and workers to create this guide revealed that migrant workers are often cautious to raise their voices even if they are victims, because labor conditions in their home countries are often worse than

16 Victims' Rights Manual (416 Foundation, 2021).

those in Korea.

Ultimately, in the context of disaster support, it is important to address the reality that migrants are often overlooked and unseen. A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it is important for migrants themselves to become aware of their right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Moreover, if we remember that, in the face of a disaster, everyone—whether Korean or migrant—is a member of the same community, then it would be clear that the rights and participation of migrants are essential for building a comprehensive disaster safety net.

Another important aspect is improving migrants' access to information. As previously mentioned, one of the main vulnerability factors for migrants in relation to disasters is the language barrier, which limits access to information. To ensure and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migrants, it is necessary to reduce language barriers

and increase accessibility. To do this, public institutions should translate information into the necessary languages based on the population of migrants living in the region, considering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deliver this information through channels that migrants frequently use. Furthermore, local migrant support centers 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can play a central role in forming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teams for disaster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advance, engaging in various activities to improve access to information (e.g., translation of disaster safety text messages in advance, sharing contact information for language assistance during disasters, etc.).



Q10.

To improve access to informatio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nd particularly real-time interpretation during a disaster are important. What should we prepare an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most important preparation would be to build a pool of interpreters in advance. As previously mention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is interpreter pool specifically for work related to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In order to cover a wide range of languages, local migrant-related organizations should identify which languages their interpreters can cover and establish relationships that allow for mutual support when needed. If such an interpreter pool is available, the next step is for the interpreters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disaster-

related content (e.g., understanding frequently occurring disasters, emergency disaster response, how to use emergency preparedness supplies, post-disaster support procedures and content, etc.)

This preparation will enable interpreters to convey information effectively. For example, “Corona Blues,” is a phrase that describes the depression experienced during self-isolation or the COVID-19 pandemic. If an interpreter does not understand this term in advance, the meaning could be entirely miscommunicated during interpretation. Similarly, the now familiar term “social distancing” can be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culture, so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its meaning in the context of COVID-19.

While we have mainly discussed content regarding information or physical response related to disasters, it is also necessary to recognize and prepare for the psychological impact. For example, the Itaewon Tragedy

took the lives of 26 foreign victims, injured 15 foreign victims, and countless migrants were directly and indirectly connected to these victims and survivors, make it necessary to consider psychological support. However, in reality, psychological counseling was only available in only a few languages, such as English and Chinese.

As a result, psychological support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had to be provided through interpretation. Immediately after the disaster, HomoInter ¹⁷ created a video titled “Practical Guide for Mental Health Counseling Interpretation”¹⁸ to assist with understanding trauma and

17 HomoInter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provides language interpretation training for non-government organization staff and interpreters supporting refugees and migrants. The integrated language interpretation training is based on intercultural philosophy with a somatic, emotional and cognitive approach. <http://www.homointer.com>

18 HomoInter,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National Trauma Center collaboratively produced this video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It outlines important considerations for interpretation for mental health counseling that focuses on preventing and healing emotional distress. <https://youtu.be/XLkkNwnIsa8>

interpretation, and provided psychological counseling interpretation training to a team of interpreters.

When a disaster occurs and migrants are among those affected, the role of interpreters becomes essential. The rapport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migrant victims and interpreters, who share a common language and cultural understanding, are key to ensuring that the support process after the disaster proceeds smoothly. For example, when negotiating with the bereaved families after a death from an industrial accident, it is emphasized how important it is for the interpreter and the family to have good rapport and be in sync. Families tend to share more information with interpreters with whom they feel a sense of closeness and trust. In such cases, it is crucial for the interpreter to accurately convey the situation to the supporting organizations, as this will greatly affect the progress of the negotiations. This is because there is a tendency for people to share more with interpreters

whom they feel close to and trust. In such cases, it is crucial for interpreters to accurately convey the situation to the supporting organizations, as this can significantly impact the negotiation process.

The principle of universal and comprehensive support during disasters was previously mentioned. However, this does not only refer to communication regarding industrial accidents that the bereaved families need while they are in Korea. Naturally, they need to engage in everyday activities such as eating, sleeping, and moving around, but they often do not receive interpretation services for these activities. Due to the absence of interpreters to assist with everyday life, there was an instance where bereaved family members were unable to order food. Moreover, given that interpretation is a public service in itself, it is important for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recognize and provide support for this.



Q11.

When interpreting for disaster victims, do interpreters also experience psychological impacts?

Yes, that is correct. Interpreters can experience psychological impact, such as secondary trauma, when interpreting difficult content. Considering the emotional distress they may face when interpreting for foreign bereaved families of the Itaewon Tragedy or for family members of migrant workers who lost their lives in industrial accidents, there is no doubt that interpreters could be deeply affected by the emotional pain they are conveying. In fact, interpreters may experience physical and psychological impact, such as emotional changes, nightmares, headaches, etc. It is crucial for interpreters to be aware of these possible signs in advance. When

migrants themselves act as interpreters, they may find it even more distressing due to increased emotional involvement. Considering these factors, it is important to provide interpreters, who are one of the key support groups, with opportunities for continuous self-care and reflection on their interpreting experiences, particularly in trauma situations. This is essential for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their work.



Q12.

For migrants, the role of their home country's embassy and the Korean government, seems important in cases of disaster. What roles do embassies play in such situations?

Embassies have various roles, but for individuals residing abroad, embassies primarily act as a small government representing their country and have the role as a protector of their citizens. It is natural for people to turn to their embassy and ask about its role during a disaster.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foreign nationals who are in Korea for short-term stay, as they might fall into an underserved and vulnerable support category in the country they are staying in. Let's look at what kind of support was provided in the case of the Itaewon Tragedy in 2022, and look into what role embassies should play.

Case 5: The Itaewon Tragedy¹⁹

The 2022 Itaewon Tragedy resulted in 159 casualties, 26 of whom were foreign nationals. In such a disaster, the role of each embassy is, first and foremost, to identify its own citizens among the victims and to provide information promptly to the bereaved families. Subsequently, from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disaster, the embassy serves as a communication channel to provide continuous updates and information on the handover of the deceased's body, funeral process, and any news or support related to the bereaved families.

 Tip. In the case of the Itaewon Tragedy, there were gaps in the information delivery and communication. In one foreign victim's case, the news of the death was communicated to the bereaved family not by the

19 This case was compiled through communication with a 10/29 Itaewon Disaster Citizens' Countermeasure Committee staff member and based on an article regarding the disaster. (<https://newstapa.org/article/ojpc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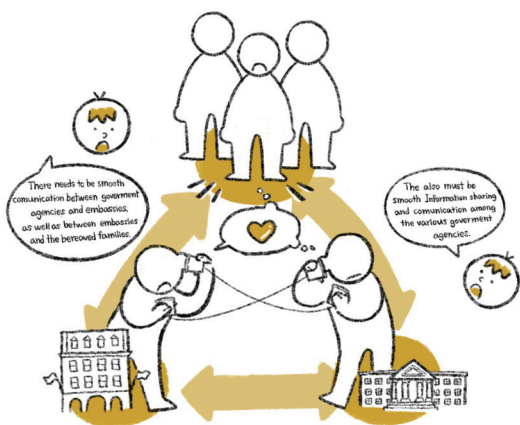
embassy but rather a friend of the deceased. In addition, an autopsy was performed prior to the handover of the deceased's body, but the bereaved family was not provided with clear information on why the autopsy was necessary.

In the case of this disast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termined the contents of the support and discussed the requests of the bereaved families, while designated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erved as a communication channel to relay the information to the families. Although the embassy's role is described as a passive communication channel for conveying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Korean government, if the relevant departments in the Korean government does not promptly share and convey information on how the situation is being assessed and how support is being provided, it is necessary for the embassy to take proactive measures

to request clarification. In addition, since the bereaved families are often in a state of shock immediately after becoming aware of the disaster, it is essential to organize and explain the procedures and content to them once again at a later time. Most importantly, it is crucial to establish channels (e.g., email address and designated staff) through which communication is easy and frequent, and to maintain a respectful attitude when dealing with the bereaved families.

Such gaps in information delivery and communication were similar for all of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26 foreign victims from 14 countries who lost their lives in the disaster. In addition, since the victims spoke over ten different languages including English, Farsi, Chinese, Japanese, French, Austrian, German, Vietnamese, Thai, and Uzbek, the bereaved families continued to face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or support due to language barrier, as well as isolation.

This was not only the case for the bereaved families but also for the survivors of the disaster. To receive support, the survivors had to register directly with the 10/29 Disaster Victim Support Unit und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yet to receive psychological support, they had to apply directly through the National Trauma Center website. As previously mentioned, this case again highlights the critical role of migrant support services hubs such as local migrant support centers 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s well as the need to establish networks.



재난피해자 권리 안내서 이주민 편

집필 오유현(호모인테르)

박재윤(호모인테르)

기획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편집 김정희, 장은하

감수 강곤

번역 김조이스

삽화 임예은

디자인 (주)디자인사과나무

표지그림 배현정

발행일 2024년 10월 21일

발행처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6 부성빌딩 7층

홈페이지 1661-2014.org

전화 02-2285-2014

팩스 02-2269-2014

이메일 kdrccwithus@gmail.com

